

2026년도 제1차 무공해차 구매용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6. 3. 18.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신청	2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6
4. 사업 관리	7
5. 완료 보고	8
[붙임 1]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9
[붙임 2] 서약서	10
[붙임 3] 무공해차 구매용자 신청서	11
[붙임 4] 예비 승인서	12
[붙임 5]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 ...	13

사 업 안 내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장기·저리 정책융자 지원으로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의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무공해차 산업생태계 활성화

나. 추진일정

- (용자접수) 2026.3.31.(화) ~ 4.9.(목)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 이전 접수 규모(600억 원) 초과시 접수 조기마감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과다한 용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최대 30일)이 가능함.
- (완료보고) 용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용자규모: 2026년 총 735억 원

라. 접수규모: 600억 원

마. 승인규모: 500억 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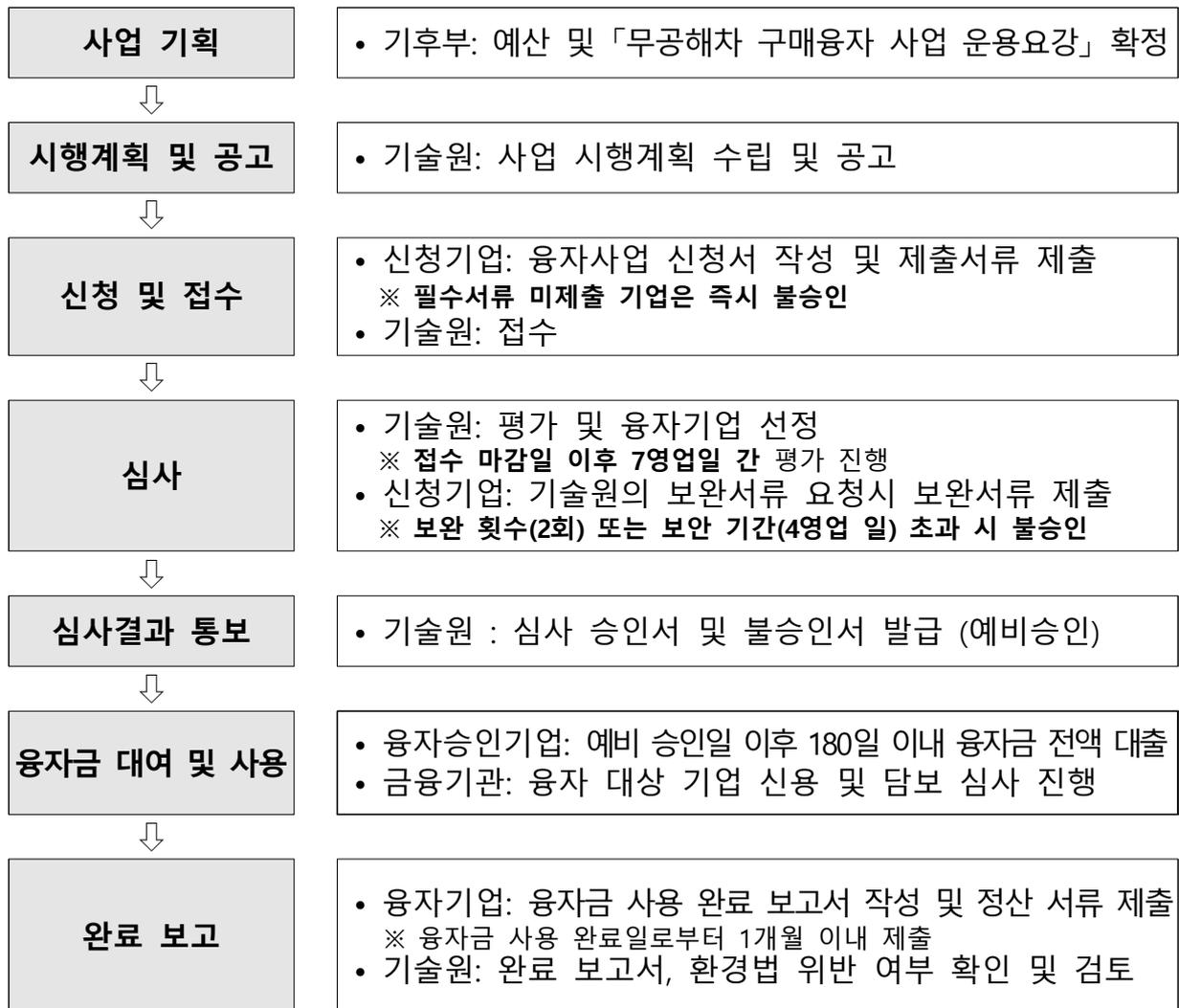
바. 용자금 사용기간: 예비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 용자금 사용기간 연장 불가

사. 지원방법: 담보대출 방식(용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금융기관)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현대커머셜 등 15개 금융기관

아. 추진 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운용요강 제3조 제4호의 여객운수사업자
 -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신청 제외 대상

-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제3조 제19호의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처분 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 과거 1년간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용자사업자
 - 과거 2년간(용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제25조의 용자승인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용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부 승인포기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자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용자를 포기한 사업자로, 용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사건으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전기·수소버스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
-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도 포함)

- 지속가능한 전기·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업자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제2항
 - 용자예비승인일 이후 180일 이내에 인도받는 전기·수소전기버스
 -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계약하거나 인도받은 전기·수소전기버스
 ※ 세부 용자 내용은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용자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2항 별표1 참조
- (지원제외)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제1항
 - 국세, 지방세, 탁송료 및 기타 증지비용
 - 용자신청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차량의 구매비용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용자조건)

사업명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무공해차구매용자	차량당 5천만 원 ~ 2억 원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또는 5년(5년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에코스퀘어)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필수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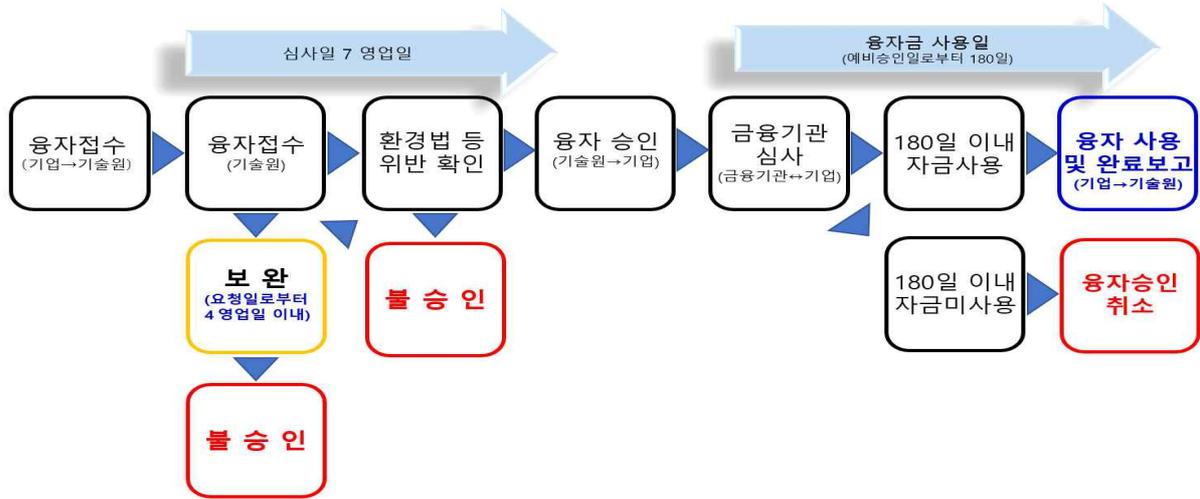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 → 선택 금융기관(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 로 등록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용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 하고 용자를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여객운수사업 면허(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등록·신고증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4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5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6	차량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년도 10월 1일 이후 차량 제작사와 계약한 서류
7	차량견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종류와 가격이 가능한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8	차량출고예정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사에서 발급한 출고 예정일이 기재된 확인서 ※ 출고된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제출 가능

바. 주요 기타사항

- (취급 금융기관 사전상담 필수)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1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 하고 용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2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용자접수 시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즉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구매 용자 사업 운용요강」 을 따름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용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 과다한 용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기간은 10영업일을 초과하여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용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등 법령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등 법령위반 이력 조회

- 법령 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 월 기준 최대 2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 과거 1년간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장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가동 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용자사업자

다. 대상기업 선정

- 용자접수 후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운용요강」 제17조(우선 지원순위 평가와 결정)에 따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우선지원

마. 주요 기타 사항

- 기술원은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 운용요강」 제16조(신청접수)에 따라 용자금 예산의 200% 내에서 접수한도를 정하여 접수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용자금의 최대 연간 150% 범위 내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6년 용자금 예산 내에서 예비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 용자 예비 승인 후 용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예비승인을 받은 기업은 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승인액의 전액을 대출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용자금 전액을 사용기간 내에 대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용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예비승인기업은 취급 금융기관 변경 또는 용자 사용 취소가 필요한 경우 용자시스템(<http://ecosq.or.kr>)을 통해 내용을 신고
 - 용자승인 변경: 용자 취급 금융기관
 - 용자승인 포기: (예비)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 기술원은 용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용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용자금 사용 완료보고

- 용자 사용기업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용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완료보고 제출 서류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국세청 출력본 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사용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 외자 구매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2	제조사 대금 입금 내역 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용자 지원된 차량의 실물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고된 차량의 사진 ※ 차량번호판 확인 가능한 사진 필수
4	차량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등록증 사본
5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5> 참고

- 붙임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2. 서약서.
 3. 무공해차 구매용자 신청서.
 4. 예비승인서.
 5.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 끝.

서 약 서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용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금융기관 신용심사 후 용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 다. 용자승인 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 라. 용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 마. 용자신청 내용이 다른 정부 지원사업 지원이력(중복신청)이 없음을 확인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신청자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 나. 용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 다. 용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용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용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용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무공해차 구매용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 용자신청자(사업자) :
- 소 재 지 :

2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무공해차 구매용자 신청서

무공해차 구매용자 신청서						처리기준			
						접수 마감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주소	회원정보			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용자 신청 내용	용자 주요 내용		전기버스 도입 / 수소버스 도입						
	차량계약일	00000 백만원		출고(예정)일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신청내용	보조금 수령	수량	차량단가	보조금 수령액	용자신청액	차량모델명	차량제조사 (매입처)	
	합계		-	-	-	-	-	-	
	전기버스 / 수소버스	Y/N							
	용자금 취급 금융기관	00000 000000 지점		금융기관 담당자	0 0 0		전화 번호	직접 입력	
	<p>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 년 00 월 00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 : _____ (날인·서명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p>								

붙임 4

예비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무공해차 구매용자 예비승인서		
0000-0000-0000-0		2000-00-00				
상호(업체명)	00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본사주소	서울시 00구 00로 000(불광동)					
예비승인내용	예비승인액	일금이억원(₩200,000,000)		취급 금융기관	00은행 00지점	
	지원설비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전기 버스		00자동차		100,000	
	수소 버스		00자동차		100,000	
	대출금리	0.00%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또는 5년상환	
	용자금사용기간	2000-00-00 ~ 2000-00-00				
중요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승인'은 취급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2. 용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용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4. 용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용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허가 없이 무단사용 시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금 강제회수 5. 용자금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6. 용자금 사용기간 내 용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7. 취급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용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용자지원 불가. 8. 당해연도 용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용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용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용자금의 지원이 가능 9. 용자승인 사업자는 용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기후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용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p>무공해차 구매용자 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금 지원을 예비승인합니다.</p> <p>발급일 2000-00-00</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p> <p>출력일 0000-00-00</p>						

붙임 5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용 사업자의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1. 기업 정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2. 법 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 사항

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확인 사항	확인
① 「무공해차 구매용자 운용요강」의 환경법 ¹⁾ 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용자 접수일로부터 제3조제20호의 환경법 위반(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등록취소)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한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기후에너지 기후부 소관 관련 제 법률을 말함	

상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무공해차 구매용자 관련 제출자료 등에 내용 중 위변조, 고위누락 등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무공해차 구매용자 운용요강」에 따라 용자금은 승인 취소 및 회수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